

—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3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3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4월 3일

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낚골당에 대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
- 상위법 개정 관련 조항 변경

다. 주요내용

- 낚골당의 명칭 변경 : 효친관 ⇒ 송조당
(제명 제1조~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2조~제14조)
- 상위 관련 법 변경 :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⇒ 장사등에관한법률(제1조)
- 토지분할로 위치에 대한 지번 조정 : 산6, 산7 ⇒ 산6-1, 산7-1로(제2조)

라. 참고사항

-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
-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(제1조) 납골당의 명칭을 산자 위주의 명칭에서 사자위주의 명칭으로 현실에 어울리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.
-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은 대부분 “납골당”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모의 집, 납골묘원, 극락 영묘전 등도 있음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 저촉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